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등록자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체류지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외국인등이 체류지에서 거주하는지 여부 3. 외국인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의 배우자·직계혈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계기관 자료열람 동의서

본인은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정정·변경·삭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등록자료, 국내거소 신고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은 본인이나 속할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에 관한 정정·변경 또는 삭제는 외국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기록 대상자’의 성명란에는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속할 세대’의 세대주 성명란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이 삭제됩니다.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 나. 가목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